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20152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피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윤승현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19가합5305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와 피고들 사이의 2014. 10. 25.자 각 75,000,000원, 2014. 11. 21.자 각 9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의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제12행의 “C로부터 제1 부동산 ~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부분을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로부터 제1 부동산 매도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제2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단 제3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의 배우자인 P가 2014. 10. 20. 액면금 합계 1억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14. 11. 6.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14. 11. 10. 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는데, 위 각 자기앞수표가 제2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 ② P는 2014. 11. 20. O조합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다음날 피고 B 명의의 O조합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 B는 2014. 11. 21. 제2 부동산 매매 관련 대출금채무승계로 O조합에서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과 위 수표금액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제2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E는 2014. 3. 5. D을 운영하면서 장모인 W 명의로 차용한 합계 약 7,400만 원, X 명의로 차용한 합계 약 1억 1,000만 원 등을 변제하였고, 2014. 3. 10. Y의 계좌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Z의 계좌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는 한편, 2014. 3. 11. AA에게 약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 제12 내지 1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2014. 10.경 내지 11.경 C로부터 제1 부동산 매도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제2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D으로 된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위 부동산 처분 직후 E가 D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제1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E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2014. 3.경 E로부터 생활비 및 대여에 대한 변제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E가 지급받아 관리하면서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제2 부동산 매수대금 중 3억 4,000만 원이 P가 발행받은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C가 제1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P를 통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의 출처나 그 지급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C가 피고들의 제2 부동산 매수 당시 제1 부동산 매도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위 돈이 제2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E로부터 받은 돈이거나 그 자체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P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은 E로부터 생활비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과 피고 A가 2014. 1.경부터 S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제2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당시 D이나 E의 채권자들로부터 법적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2014. 1.경 피고 A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에 약 2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고 그 이후 다수의 현금 인출이 있었던 점(갑 제12호증, 을 제36호증)에다가 피고들과 P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이 제2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3억 4,000만 원의 출처나 그 지급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돈이 제2 부동산 매수 당시 C로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2014. 10.경 내지 11.경 제1 부동산 매도대금 중 3억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A가 C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2014. 10.경 내지 11.경 피고 A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석조, 판사 김길량, 판사 김용민